

의안 번호	제2591호
----------	--------

2025. 3. 11.(화) 11:00
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안 건
총 1건(개정 조례안 1) : 붙임 참조



산업건설위원회

심사보고 총괄

I 심사대상 안건

- 의안번호 제2591호 :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II 심 사 경 과

의안번호	제 출 일	제 출 자 (발 의 자)	회 부 일	상 정 일 (제1차 산건위)
제2591호	2025. 2. 20.	장성군의회의회장 (최미화 의원)	2025. 2. 28.	2025. 3. 10.

III 심 사 결 과

안 건	심사결과
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5. 2. 20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최미화 의원)
- 회부일자 : 2025. 2. 28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5. 3. 10.(제3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【제안이유】

- 장성군 신중년층의 일자리창출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【주요내용】

- “신중년층” 관련 용어 신설(안 제2조)
- “신중년” 용어 삽입(안 제7조)
- “신중년 취업지원 사업” 관련 내용 신설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개정안은 신중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과 창업, 직업 능력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용어 삽입 및 조항을 신설하여 중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

5. 토론요지 :

6. 심사결과 :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